



실험실습실 관리책임 교수제 시행지침

규정번호	2-3-16
제정일자	2001. 3. 1.
개정일자	2024.3.20.
책임부서/팀·계	사무처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각 실험실습실 관리책임 교수제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실험실습과 교수학술연구의 효율적 지원과 실험실습기자 재의 합리적인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임무) 관리책임교수는 전조(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실험실습실의 다음 사항에 관한 업무를 장리(掌理)한다.

1. 실험실습실 운영계획 수립
2. 실험실습용 기자재의 관리 ·감독
3. 실험실습용 기자재의 구매요청
4. 실험실습용 기자재의 보완계획 수립
5. 기타 전항(前項)에 수반되는 사항

제3조(위촉) 관리책임교수의 위촉은 전임교원 중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학과장의 추천으로 사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위촉한다.<2023. 3. 30. 개정>

제4조(변경) 학과장은 관리책임교수의 퇴직,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장에게 그 사유를 구신(舊新) ·변경 조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수인계) ① 전항의 조치에 따른 신(新) ·구(舊) 관리책임교수의 인수인계 사항은 학과장 입회하에 서면으로 작성,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교수가 퇴직 또는 유고(有故)시 후임 관리책임교수의 위촉이 불가능 할 때에는 학과장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6조(재물조사) 관리책임교수는 매학기 기자재 및 비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고장, 폐품, 망실 등의 상황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